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9 발의연월일: 2020. 6. 24.

발 의 자 : 이 용・강기윤・김정재

김예지 · 안병길 · 서정숙

김태흠 • 박덕흠 • 유의동

김도읍 · 김성원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당시 김연아의 세계선수권대회 우승과 야구대표팀 WBC(월 드베이스클래식)준우승의 경제적 효과는 대략 1조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체육인들의 각종 국제스포츠대회 수상 등을 통한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제고의 경제적 가치는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큼.

그러나 스포츠 강국 체육 인프라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기업의 운 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원은 고작 연간 10억원 정도 에 불과함.

- ※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
- 중소기업: ('18) 2곳, 5,700만원, 일반법인: ('18) 4곳, 8.95억원

현행과 같은 낮은 세액공제율로 인해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참여는 매년 저조해지고 세액공제 지원기한 역시 짧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법인세 공제액을 상향조정하여 기

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04조의22).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2제1항 중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을 "해당 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장애인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20"을 "해당 장애인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20"을 "해당 장애인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30"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개 정 안 제104조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제104조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 ·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설치 ·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이 하 이 조에서 "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 -----해당 운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 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의 100분의 20-----해당 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 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 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하다. ②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운동경기부" 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 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당 장애인운동경기부의 운영에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 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 하는 비용의 100분의 30----도까지 해당 장애인운동경기부 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

<u>의 20</u>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 세에서 공제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 또는 장애인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날부터 3년(장애인운동경기부의 경우 5년) 이내에 해당 운동경기부 또는 장애인운동경기부를 해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단 구성 등에 관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때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한다.

 ③ (현행과 같음)

 <삭 제>